

제 8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방문요양 세부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신체활동지원서비스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몸 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등
- (2) 가사활동지원서비스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세탁·주변정돈 등
- (3) 개인활동지원서비스 : 외출 시 동행·부축, 일상업무 대행 등
- (4) 정서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 상담, 의사 소통 도움 등

2. 방문목욕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목욕 전 : 욕조 준비, 목욕 준비(수급자 상태관찰, 욕조로 이동, 옷벗기, 입욕)
- (2) 목욕 중 : 몸 씻기(얼굴, 손/팔, 발/다리, 가슴/배, 등/엉덩이, 국부, 머리감기)
- (3) 목욕 후 : 관리(물기 제거, 옷 입기), 정리(주변 정리)

3.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 (1) 기관의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를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전하는 경감 대상자는 40% 혹은 60% 경감 한다.
-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 (3)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제반 비용의 발생은 수급자 본인이 지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1]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금

2026.01.01. 기준

1. 등급별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단위 : 원)

2. 재가급여 1회 방문당 수가

(1)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15%)	급여제공시간	수가	본인부담(15%)
30분 이상	17,450	2,618	150분 이상	50,640	7,596
60분 이상	25,320	3,798	180분 이상	57,020	8,553
90분 이상	34,120	5,118	210분 이상	63,530	9,530
120분 이상	43,430	6,515	240분 이상	70,080	10,512

(단위 : 원)

(2) 방문목욕

구분	수가	본인부담(15%)
차량이용(차량 내 목록)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목록)	80,230	12,035
차량 미이용	50,100	7,515

(단위 : 원)

3.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	15%
의료기초수급권자	0%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해당자)	6% 또는 9%

4.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기본원칙 : 재가급여 월 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 금액을 전액 비급여로 수납할 수 있으며, 수급자의 개별적 요구에 의해 기관에서 대신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 그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